

서울시립대학교 『租稅와 法』 원고작성 및 논문투고 요령

전면개정 2018. 03. 20

일부개정 2019. 07. 26

일부개정 2023. 12. 08

일부개정 2024. 10. 09

I. 논문의 제출

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조세재정연구소가 공동 발간하는 『租稅와 法』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간예정일 2개월 전까지(논문투고 공고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여, 법학연구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s://lriuos.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또는 조세재정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지정토론 또는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논의를 반영하고,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하여 『租稅와 法』 발간예정일 2개월 전까지(논문투고 공고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https://lriuos.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논문에서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4. 투고논문은 『租稅와 法』의 ‘논문게재신청서’와 ‘연구윤리확인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개정 2024.10.09.>
5. 논문 투고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0.09>

II. 원고의 작성

1. 제출하는 논문의 원고파일은 (주)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한글” (*.hwp) 또는 MS워드로 작성하되, 한글(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한문 혼용 또는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로 작성할 수 있다.
2. 논문의 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조판 면수 33면 내외로 한다. <개정 2023.12.08>
3.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호의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 1) 편집용지 설정 : 폭 153mm × 길이 225mm
 - 2) 용지여백 설정 : 위 23, 머리말 12, 왼쪽 22, 오른쪽 22, 아래 10, 꼬릿말 10.
 - 3) 글자모양 설정 : 글꼴 휴먼명조, 크기 10.3, 장평 95, 자간 -10.
(각주: 글꼴 휴먼명조, 크기 9, 장평 95, 자간 -10)
 - 4) 문단모양 설정 : 줄간격 180, 원·오른 여백 0, 문단 위·아래 0, 정렬방식 혼합.
(각주: 줄간격 135, 내어쓰기 13.1)
4. 논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구성한다.
 - 1) 제목

- 2) 저자명, 소속
 - 3) 국문초록
 - 4) 국문 주제어(5단어 내외)
 - 5) 목차
 - 6) 본문
 - 7) 참고문헌
 - 8) 외국어 초록
 - 9) 외국어 주제어(5단어 내외)
 - 10) 부록(필요한 경우)
5. 2인 이상의 저자에 의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 등을 논문게재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6. 학위논문 기타 연구보고서 등의 축약본 또는 일부 제출시에는 각주로 이를 정확히 명시한다.
7. 본문의 구성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 1) 심사용 제출본에서는 본문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성명, 소속, 줄고 등)을 삭제해야 한다.
 - 2) 도표는 그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단에 기재한다.
 - 3) 그림은 표제 및 설명을 그 하단에 기재한다.
 - 4) 본문 내 목차의 순서는 “I.”, “1.”, “1)”의 순서로 하되, 그 아래의 목차번호는 저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5) 처음 인용할 경우에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민법(제10판)』, 박영사, 2010, 222면.
 -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제○○권 제○호,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법에 관한 연구”, 「법철학이해」 제1권 제1호, 2010, 138면.
 -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 ○○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법에 관한 연구”, 홍판서선생회갑기념논문집, 「과거와 현행법에 대한 이해」, 박영사, 2010, 123면.
 - (4) 판결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인용방식에 준하여 표시한다.
판결 : 대법원 ○○○○. ○○. ○○. 선고 ○○누○○ 판결
결정 : 대법원 ○○○○. ○○. ○○. 선고 ○○두○○ 결정
헌법재판소 ○○○○. ○○. ○○. 선고 ○○헌가○○ 결정
 - (5)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 (6) 외국판결 :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 6)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각주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 (1) 저서 : 저자명, 앞의 책(또는 전제서), 면수.
 - (2) 논문 :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전제논문), 면수.
9. 초록 및 주제어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작성한다.
- 1) 게재원고가 국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 외국어 초록과 외국어 주제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알파벳이 들어가는 외국어로 작성하되 1면 이상 2면 이내로 작성한다.

- 2) 게재원고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 및 국문 초록과 국문 주제어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Ⅲ. 기타

1. 『租稅와 法』에 투고된 논문이 위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租稅와 法』에 투고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최종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09>
3. 『租稅와 法』에 게재 확정된 논문 필자에게는 『租稅와 法』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